韓國心理學會誌 :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3, Vol. 27, No. 2, 69-83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에 대한 법문화의 영향*

성 유 리 김 종 한 Cynthia A. Meyersburg 박 광 배†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Coastal Carolina University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는 다양한 사회심리학적 편향성이 개입될 수 있으며, 문화에 따라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대학생 202명과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205명을 대상으로 법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할 때 법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상황요인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와 그 판단에 법문화의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한 실제의 정당방위 사건의 내용을 토대로 위험의 '현재성'(부당한 침해의 급박성)을 조작한 두개의 사건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사건종류(2수준), 국가(2수준), 현재성(2수준)의 8개 조건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참가자들의 판단을 분석한 결과, 미국인이 한국인에 비해 정당방위를 월등하게 높은 비율로 인정하였고,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 현재성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정당방위를 더 많이 인정하였다. 이런 결과는 사회심리학에서 널리 알려진 문화적 귀인양식(근본귀인오류)의 차이보다 국가 간 법문화의 차이가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결과가 정당방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배심재판에 대해 가지는 함의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 정당방위, 법문화, 근본귀인오류

* 이 논문은 2011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1)

† 교신저자: 박광배,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 심리학과, (361-76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Tel: 043-261-2195, E-mail: kwangbai@chungbuk.ac.kr

www.kci.go.kr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관한 '설명기반모형(explanation-based model: Pennington & Hastie, 1990, 1991)에 의하면, 배심원들은 재판절차에서 드러난 여러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적인 인과모형(causal model)을 구성하고, 그 인과모형과 부합하는 판단범주('유죄' *v.* '무죄')를 선택한다. 배심원이 구성하는 인과모형은 흔히 재판에서 알려진 사실들과 인간의 의도된 행위에 대한 배심원의 사적인 지식으로 구성된 '이야기'(story)의 형식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 전체를 촉발하는 특정 사건에서 시작되고, 목적, 행위, 결과, 그리고 주변상황이 인과관계구조를 형성하면서 연결된다. 배심원이 구성하는 가설적인 이야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원인에 귀착되는가에 따라 배심원의 최종 판결이 좌우될 수 있다. 그런데 배심원이 구성하는 이야기에는 배심원의 사적인 지식들이 가미되므로(Smith, 1991; Robinson & Darley, 1996),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귀인에는 근본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Ross, 1977), 궁극귀인오류(ultimate attribution error: Pettigrew, 1979), 행위자-관찰자 효과(actor-observer effect: Jones & Nisbett, 1972), 정의로운 세상 가설(just world hypothesis: Lerner, 1980) 등의 다양한 사회심리학적 편향성들이 개입될 수 있다(Dripps, 2003; Quintanilla, 2010; Davies, 1991; Gold, 1983; Slobogin, 2002; Lelling, 1998).

많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귀인이 첨예한 이슈가 된다. 예를 들면, 위법행위의 '고의성(scienter)'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고, 위법행위를 초래한 원인이 행위자의 의지로 통제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처벌받을 수 있는 역량)이 면제(excuse)되기도 한다(e.g., 책임무능력, 정신장애). 심지어는 피고인 행위를 어떻게 귀인하는가에 따라서 피고인 행위가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로 판단되거나, 정반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정당한 행위 즉, 정당방위(self-defense)로 판단되기도 한다.

정당방위는 범죄와 위법에 관한 법이론/철학에 기초한 법개념이다. 영국과 유럽대륙에서 발전한 사법제도를 계승한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행위이며,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이면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배제)하는 사유가 된다(대한민국 형법 제21조). 위법성의 조각은 위법의 부재 혹은 행위의 적법성(justification)을 확인하는 것이며,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면제(excuse)와는 질적으로 다른 실정법 개념이다(Baron, 2005; Malone, 2009). 다시 말해,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처벌을 면제하거나 정상을 참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상당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네 가지의 요건을 지칭한다(손해목, 1996; 신대철, 2002, 이용식, 1995; Greenwald, Tomkins, Kenning, & Zavodny, 1990; Grumer, 2004); 첫째는 방위된 법익이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e.g., 훔친 물건을 강탈하려는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법익은 본인 혹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을 말한다. 둘째는 실질적 손해 또는 위험을 야기하는 인간의 행위인 침해가 부당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요건인 현재성 요건은 이성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보편적인(universal) 관점(소위, 사회통념)에서 볼 때 침해의 위험이 급박(imminent)한 상황이라야 한다. 이는 침해가 급박한 상태, 혹은 바로 발생하였거나 계속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넷째 요건인 필요성 요건은 그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사한 방위의 수단과 정도가 이성적인 사람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만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승객들이 타고 있는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라이터를 손에 들고 빈 좌석에 휘발유를 뿌리고 있는 상황은 위험이 급박한 상황이고, 휘발유를 뿌리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은 상황의 급박성과 심각성에 비

www.kci.go.kr

추어 필요한 만큼의 방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에는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가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하는 즉, 사회적으로 보편적이고 정당한 방위가 된다(김태명, 2008). 그러나 만약 이성적인 사람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시 상황에서 위험이 급박하지 않았다거나, 방위행위가 상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비해서 과도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위행위('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라도 범죄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범죄행위(i.e., 상해)가 될 수 있다. 즉, 정당방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를 놓고 그것이 처벌해야할 범죄행위인가, 아니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정의로운 행위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며, 상당 부분 그 피고인의 행위를 전후한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심리학적 현상이며 동시에 문화적인 현상이다. 사회적인 정보 혹은 자극을 처리하는 인간의 보편타당한 양식과 정보처리자가 속한 문화의 특수한 양식이 상호작용하여 타인의 행위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타인의 행위를 행위자의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을 가지고(Jones & Davis, 1965; Gilbert & Malone, 1995; Jones, 1979; Nisbett & Ross, 1980; Ross, 1977), 그러한 경향은 진화적인 적응의 기제로 발달해온 것이기 때문에(Haselton & Buss, 2000; Andrews, 2001), 인간의 보편적이고 범세계적인 속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집단주의 가치관이 강한 문화권에서는 그 경향이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Choi, Nisbett, & Norenzayan, 1999). 따라서 정당방위 여부가 다투어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도 보편적인 정보처리양식과 문화적인 양식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상당 부분 피고인의 행위를 전후한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본 연구는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상황'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정도에서 문화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정당방위 판단에 대해 법문화의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타인 행위의 귀인

사람들이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는 일반적 양식을 대변하는 핵심용어는 '일치추론(corresponding inference)'이다(Jones & Davis, 1965). 타인의 마음, 욕구, 생각 등의 내적 상태는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그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정보와 종합하여 행위자의 내적 상태를 추론한다(Gilbert & Malone, 1995; Schneider, Hastorf, & Ellsworth, 1979). 만약 상황이 행위의 원인에 대한 다른 가능성을 특별히 암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위는 행위자의 내적 상태가 표출되는 것으로 즉, 행위와 내적 상태가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상황이 특별히 다른 이유를 암시하지 않을 때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은 식욕이 있을 것으로, 혹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이유가 식욕 때문일 것으로 추론한다.

타인의 행위에 대한 이해가 행위 자체에 대한 정보와 그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때로는 타인의 행위를 초래한 상황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자명한 경우에도 사람들은 그 행위의 원인을 행위자의 내적 요인에 귀인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Jones & Harris, 1967). 이 귀인오류를 Ross(1977)는 '근본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고 지칭하였다. 주로 미국인들에서 관찰되는 근본귀인오류는 타인의 행위를 이해할 때 일치추론 경향(행위와 일치하는 내적

www.kci.go.kr

요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서 상황적 요인을 도외시하는 혹은 상황적 요인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오류를 의미한다(Gilbert & Jones, 1986; Snyder & Jones, 1974).

사람들이 타인의 행위를 이해할 때 근본귀인오류를 범하는 이유 혹은 강력한 일치추론 경향을 가지는 이유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다. 한 가지 가능성은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은 많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데(Vonk, 1999; Yost & Weary, 1996), 사람들은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이기 때문에 정확한 귀인을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크지 않을 때는 비록 근본귀인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인지적 자원을 아낄 수 있는 일치추론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원리에 의해 근본귀인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근본귀인오류가 진화적인 적응기제의 일종임을 암시한다. Haselton & Buss(2000)의 오류관리이론(error management theory)에 의하면, 사회심리학에서 알려진 많은 편향, 휴리스틱, 편견, 착각, 오판 등은 인간의 비합리성 혹은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아니라, 진화적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원리에 의해서 인간에게 획득된 특질이라는 것이다. 모든 판단에는 제1종 오류(옳은 가설을 기각하는 오류)와 제2종 오류(틀린 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두 종류의 오류를 동시에 회피하기 어렵다. 반복되는 판단에서 제1종 오류를 회피하고자 노력하면 제2종 오류가 증가하고, 제2종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면 제1종 오류가 증가한다. 따라서 판단자는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의 '비용'과 각 오류를 범하지 않을 때의 '이익'을 비교하여 반복되는 판단에서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전체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 그 전략은 제1종 오류를 많이 범하더라도 제2종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것일 수도 있다. 이 오류관리이론에 의하면, 사회심리학에서 알려진 많은 편향, 휴리스틱, 편견, 착각, 오판 등은 궁극적으로 이익을 최대화하거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의 산물이며, 그 전략을 잘 구사하는 개체들이 자연선택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진화해온 결과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상황에 의해 촉발된 타인의 행위를 행위자의 내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오해하는 근본귀인오류는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내적 상태(생각, 마음, 욕구, 의도, 선호, 등)를 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발달해온 진화전략으로 생각된다. 타인의 특정 행위가 그 행위자의 욕구 혹은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때 기대되는 이익이 그 판단이 틀렸을 때 기대되는 손해보다 큰 반면, 상황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때 기대되는 이익은 그 판단이 틀렸을 때 수반되는 손해보다 작다면, 때때로 오류를 범하더라도 타인의 행위를 언제나 내적 요인에 귀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진화전략이 될 수 있다(Andrews, 2001). 예를 들어 범죄행위는 행위자의 범죄성이 강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처럼 생활고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범죄행위를 범죄성에 귀인하여 행위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것이 옳은 경우에는 사회를 범죄위험에서 보호하는 이익이 생기고, 범죄성에 귀인하는 것이 틀린 경우에는 선한 개인에게 무의미한 고통을 주는 손해가 생긴다. 이런 경우, 레미제라블의 양심적인 형사 자베르처럼 장발장의 범죄행위를 내적 요인(범죄성)에 귀인하는 것이 기대이익은 크고 기대손해는 작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범죄행위를 생활고에 귀인하여 처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주는 이익이 생기고, 생활고에 귀인하는 것이 틀린 경우에는 사회가 범죄위험에 노출되는 손해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범죄행위를 상황요인(생활고)에 귀인하는 것은 기대이익이 작은 반면 기대손해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범죄행위를 내적 요인에 귀인하는 것이 상황 요인에 귀인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이익이 더 크고 손해가 더 작다면, 비록 귀인오류가 다소 생기더라도

www.kci.go.kr

계속해서 내적 요인에 귀인하는 것이 효과적인 진화전략이 되기 때문에 근본귀인오류의 특성이 인간과 함께 진화해 왔다는 것이다.

타인 행위의 이해에서 상황요인을 도외시하는 근본귀인오류가 진화적인 토대를 가지고 인간과 함께 발전한 특성이라면 세계의 모든 나라와 인종에서 거의 유사한 정도로 관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본귀인오류는 범세계적인 현상이 아닌 것으로 잘 알려졌다. 특히 집단주의 가치관이 강하고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t)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화에서는 개인주의 가치관이 강하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독립성(independent)이 강조되는 문화에 비해서 근본귀인오류가 덜 발견된다(Choi & Nisbett, 1998; Hung, Chiu, & Kung, 1997; Ji, Peng, & Nisbett, 2000; Masuda & Kitayama, 2004; Markus & Kitayama, 1991a, b; Morris, 1993; Morris, Nisbett, & Peng, 1995; Morris & Peng, 1994; Zebrowitz, 1990).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는 문화에서 근본귀인오류가 덜 발견되는 것은 그러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행위에 대한 내적 요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적 요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Choi, Nisbett, & Norenzayan, 1999). 이러한 사실은 타인 행위에 대한 귀인기제가 진화적 가치(타인의 내적 상태를 간파하는 가치)에 의해 발전해온 것은 맞지만, 귀인에 대한 오류관리 기준이 문화에 따라 미묘하게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타인의 행위를 주로 내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상호작용에서 유용하고 이익이 되는 반면,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가 상호의존적인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타인의 행위를 정확하게 귀인해야 할 필요성과 유용성이 더 클 수 있다.

법문화

현대의 동양, 특히 동아시아의 법제도는 라틴 경구 "Rex Lex"("왕이 법이다")로 특징되는 로마법을 계승한 유럽대륙(독일과 프랑스)의 시민법(civil law) 전통에 근거한다. 또한 유럽대륙의 법제도가 유입되기 전에는 유교의 법개념이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법제도를 이루는 근간이었다. 유교전통과 시민법 전통에서는 공히 '법의 지배'(rule of law)개념이 훌륭하고 고매한 사회엘리트들과 덕망있는 지도자의 선정(good governance)에 의해 우주적 질서를 반영하는 계급/계층사회가 평온하게 안정되고 전체 사회의 질서가 완벽한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Chu, Diamond, Nathan, & Chin, 2008). 물리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항상 변하고, 오직 정서/관념적으로만 위태롭게 연결되어 있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본질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자연상태에서는 항시 엔트로피(와해)의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늘, 임금,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 이어지는 위계질서가 흔들림없이 유지되어 사회가 와해되지 않도록 결속하고 한 덩어리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유교적 법개념은 현대 한국의 형법에도 아직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 한 예가 '존속살해'(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와 '영아살해'(대한민국 형법 제251조)를 별도의 법조문으로 서로 달리 구별하는 것이다. 간단히 표현해서, 자식이 부모를 살해(존속살해)하면 일반 살인보다 형벌이 가중되지만, 부모가 자기방어 능력이 전무한 갓난 자식을 살해(영아살해)하면 일반 살인보다 형벌이 감경된다. 존속살해/영아살해의 법개념은 현재 오직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남아있지만, 동아시아의 법문화에서는 기존사회의 안정과 기존질서의 유지, 그리고 집단의 존속이 개인의 자유 및 권리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인식된다.

반면에, 영국과 미국의 보통법(common law)제도는 전제군주의 절대권력을 현저히 제한한 1215년의 대헌장(Magna Carta)과 인간의 천부권리를 천명한 1689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서 비롯되었다. 두 문서의 골자는 군주의 모든

www.kci.go.kr

통치행위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틴 경구 “Lex Rex”(“법이 왕이다”)로 대변되는 영미의 보통법 제도에서 ‘법의 지배’ 개념은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와 집단의 전횡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발전하였다. 미국에서 수많은 총기범죄와 총기사고에도 불구하고 총기소지의 불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국가가 개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폭압적인 힘을 행사하는 경우에 개인이 무장하여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방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 즉, 정당방위 이념이다.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를 전후한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한국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실제 사례가 매우 드물다.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자 그 칼을 뺏어 그 칼로 반격을 가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대판 1984. 1. 24. 83도1873). 만취한 처남이 피고인의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며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몸이 육중한 처남이 왜소한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목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피고인이 근처에 놓여 있던 과도로 처남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대판 2000. 3. 28. 2000도228).

행위귀인에 관한 사회심리학 연구들과 법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법정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는 한국의 법정에서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상황’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행위에 대한 상황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 즉, 일치추론의 경향(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을 피고인 내부에서 찾으려는 경향) 혹은 근본귀인오류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는 유교의 법개념과 시민법 전통의 제도에 기초한 한국의 법문화는 정당방위에 대해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사회질서의 유지를 더 중시(비록 신체와 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더라도 개인이 자구수단을 쉽게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잠재된 이념)하기 때문일 수 있다.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한국 법정의 판단은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법관념을 반영하는 것일까? 성유리, 박광배(2012)는 대한민국의 일반인들이 정당방위 판단에서 상황요인을 고려하는지 즉,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촉발한 상황요인이 존재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그 상황요인에 귀인하는지, 아니면 그때에도 피고인의 내적 요인에 귀인하는 일치추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재판 시나리오를 이용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여 배심원 자격이 있는 일반인 403명의 판단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조사하였다. 그 연구에서 대한민국의 일반인들은 상황요인의 존재유무에 따라 정당방위 인정을 크게 달리한다는 것(상황요인의 주효과)이 관찰되었다. 성유리, 박광배(2012)의 결과는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한국 법정의 판단이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법관념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는, 성유리, 박광배(2012)의 연구에서 정당방위 판단에 대한 상황요인의 효과는 집단주의 가치관을 강하게 가진 사람들에서만 관찰되었고, 개인주의 가치관을 강하게 가진 한국인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당방위 판단에 대한 상황요인의 효과에서 문화차이가 시사되었지만, 동일한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인들만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인 까닭에 그 문화차이에 대해 결론적인 해석을 도출하기 어렵다.

서양문화권의 사람들에 비하여 근본귀인오류를 덜 범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일반인들은 형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이해에서도 서양문화권의 사람들에 비하여 상황요인의 역할을 더

www.kci.go.kr

많이 고려할 것인가? 또한 일반인들의 정당방위 판단도 법문화의 영향을 받을까? 이 물음들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당방위의 법적인 상황요건 중 가장 핵심적인 '현재성'(위험의 급박성) 요건을 변화시켰을 때 한국과 미국의 일반인들의 판단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한국인들의 판단과 미국인들의 판단을 비교하여 일반인들의 정당방위 판단도 법문화의 영향을 받는지 검증하였다. 성유리, 박광배(2012)에서 시사된 것처럼,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한국 법정의 판단 양식이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법관념과 괴리된 것이라면, 일반인들의 판단에는 상황요인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일반인들의 정당방위 판단도 법문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한국인들이 미국인들보다 정당방위 인정을 덜 할 것으로 예측된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는 정당방위 판단에 대한 법문화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참가자는 202명(남자 103명, 여자 99명)이었고, 평균연령은 22.11세(범위: 19~32)였으며, 충북대학교에서 심리학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되었다. 법지식을 가진 법학 전공생은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미국참가자는 미국 남부 South Carolina에 위치한 Coastal Carolina University에서 심리학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205명(남자 65명, 여자 140명, 성별 무응답 2명)이었고, 평균연령은 20.33세(범위 16~35)였다. 미국참가자 전원은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이고, 인종은 백인이 146명(70.5%), 흑인 48명(23.2%), 히스패닉 3명(1.4%)이었으며, 동양인종은 없었다.

도구

실험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성유리, 박광배(2012)가 사용하였던 살인사건과 상해사건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어 시나리오를 영어로 번역한 후 영어 시나리오를 다시 한국어로 번안하는 절차를 거쳐서 내용이 동일한 시나리오가 두 언어로 제작되었다.[1)]

두 시나리오는 모두 실제 대한민국에서 피고인이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를 주장했던 사건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양국 참가자의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과 한국의 거주형태 차이, 생활양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서 수정된 것이다. 살인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였으나 과잉방위를 주장했던 사건(청주지방법원 2009고합145)을 배경으로 하였으며, 상해사건 시나리오는 1986년에 피고인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일회 가격한 사건(대판 1986.10.14, 86도1091)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재구성하였다. 살인사건의 경우는 실제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상해사건의 경우는 그것을 인정하였다.

한국인과 미국인의 개인/집단주의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1995)가 개발한 The Scale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SIC)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가치관을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수직과 평등을 강조하는 수평 차원으로 나누어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 HI),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 VI),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 HC)와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 VC)를 측정한다. HI는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구분되는 존재이며 평등을 강조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VI는 개인 간의 불평등과 계급체계를 인정하고 경쟁을 강조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HC는 소속된 집

1) 본 연구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요청시 교신저자가 보내드립니다.

www.kci.go.kr

단의 결정을 존중하고 집단과의 상호의존성이 있으나, 개인은 평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고, VC는 집단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표를 희생할 수 있는가,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정도, 집단 내의 불평등을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SIC의 각 차원은 8문항으로 측정되고, 각 문항은 9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HI가 .67, VI는 .74, HC는 .74, VC는 .68로 보고되었는데(Singelis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HI가 .74, VI는. 83, HC는 .81, VC는 .66으로 나타났다. SIC의 구성개념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의 수를 4개로 지정하여 다시 주축요인분해(Principal Axis Factoring)를 실시하고 사각회전(Oblimin)을 한 결과, 요인 1에는 HC문항들이 포함되었고, 요인 2에는 VI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요인 3은 VC, 요인 4는 HI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실험조건

각 2개씩의 수준을 가지는 세 가지 독립변인을 조작하여 총 8개의 실험조건(2x2x2)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독립변인인 '국가'는 미국과 한국의 법문화적인 특성이 정당방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작하였다. 두 번째 독립변인은 '사건종류'로 살인사건과 상해사건 두 개의 수준을 가지며, 범죄의 종류에 따라 정당방위 인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작되었다. 예를 들어 살인의 경우,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상해사건은 살인에 비하여 덜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여 정당방위 인정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독립변인은 '현재성'이다.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일어난 시점에 피해자에 의한 위험의 지속성 여부를 조작하여 현재성이 존재하는 조건(유)과 현재성이 부재하는 조건(무)으로 조작하였다.

실험절차

참가자는 연구의 목적을 먼저 읽은 후, 4종류의 시나리오 중 무작위로 선정된 한 가지 시나리오를 읽었다. 시나리오를 읽은 후, 참가자는 종속변인이 되는 피고인의 유죄·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귀하가 이 사건의 배심원이라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설문에 응답하는 동안 재판 시나리오를 다시 읽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이 모두 끝나면 참가자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에 응답하였다.

결 과

가치관

집단/개인주의 가치관을 측정하는 SIC의 4개 차원 점수들의 평균이 표 1에 제시되었다. 집단/

표 1. SIC 4개 차원 점수 평균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국가	*N*	*M*	*SD*	*M*	*SD*	*M*	*SD*	*M*	*SD*
한국	202	47.27	7.90	44.72	11.06	51.74	8.65	49.08	7.24
미국	205	56.77	7.45	40.46	11.81	55.25	8.99	44.05	9.97
$t(404)$		12.45**		-3.76**		4.00**		-5.80**	

**$p<.01$

www.kci.go.kr

개인주의의 4개 차원 모두에서 국가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특히 수직적 가치관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상관없이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높고, 수평적 가치관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상관없이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높았다. 따라서 한국인과 미국인의 가치관 차이는 집단/개인주의 차원보다는 수평/수직 차원에서 더 일관되고 크게 나타났다.

정당방위 판단에 대한 국가, 사건종류, 현재성의 효과

정당방위 판단에서 참가자 성별에 따른 차이는 8개의 실험조건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의 모든 분석은 참가자 성별의 구분없이 이루어졌다.

각 실험조건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한 참가자의 비율이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의 비율들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국인의 판단과 미국인의 판단 사이의 차이다. 한국인들은 정당방위 인정비율이 미국인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미국인들은 살인사건에 대하여 심지어는 위험의 현재성이 없는 조건에서도 대부분(92%) 정당방위를 인정하였다. 이 결과는 같은 조건에서 한국인들의 인정비율이 28%에 불과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표 2의 비율들에 대한 국가, 사건종류, 현재성의 효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고,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정당방위 판단에 대한 국가(미국 *v*. 한국)의 주효과(*Wald* χ^2=48.42, p<.001)와 현재성(유 *v*. 무)의 주효과(*Wald* χ^2=19.62, p<.001)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국가와 사건종류의 이원상호작용효과(*Wald* χ^2=8.75, p<.005)와 국가, 사건종류, 그리고 현재성의 삼원상호작용효과(*Wald* χ^2=5.03,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정당방위 판단에 대한 국가의 주효과, 국가와 사건종류의 상호작용효과, 그리고 국가, 사건종류, 현재성의 삼원상호작용효과가 한국인과 미국인의 집단/개인주의 가치관의 차이로 설명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SIC의 4차원 점수를 독립변인으로 추가해서 총 11개의 독립변인을 가지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SIC의 4개 차원점수는 모두 정당방위 판단에 대해 주효과가 없었고, 국가의 주효과(*Wald* χ^2=28.09, p<.001), 국가와 사건종류의 상호작용효과(*Wald* χ^2=18.21, p<.001), 그리고 국가, 사건종류, 현재성의 삼원상호작용효과(*Wald* χ^2=5.97, p<.05)에도 표 3에 제시된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표 2. 정당방위 인정 비율(%)

국가	사건종류	현재성	*N*	정당방위 인정 (%)
한국	살인	유	51	55
		무	51	28
	상해	유	50	66
		무	50	42
미국	살인	유	48	94
		무	48	92
	상해	유	50	94
		무	53	49

www.kci.go.kr

표 3. 정당방위 판단에 대한 국가, 사건종류, 현재성의 효과

효과	*B*	*SE*	*Wald* χ^2	*p*
국가	1.032	.148	48.416	<.001
사건종류	-.160	.148	1.158	ns
현재성	.657	.148	19.615	<.001
국가 × 사건종류	-.439	.148	8.745	<.005
국가 × 현재성	.118	.148	0.634	ns
사건종류 × 현재성	.287	.148	3.748	ns
국가 × 사건종류 × 현재성	.333	.148	5.034	<.05

주. 모형 우도비 카이자승(likelihood ratio χ^2)=114.037, df=7,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한국인들의 판단과 미국인들의 판단을 비교하여 일반인들의 정당방위 판단도 법문화의 영향을 받는지, 또한 정당방위의 법적인 상황 요건 중 가장 핵심적인 '현재성'(위험의 급박성)요건이 한국과 미국의 일반인들의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는지 검증하였다.

정당방위 판단에서 한국인들의 판단과 미국인들의 판단이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Wald\ \chi^2$ =48.42, p<.001).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재판 시나리오의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무죄판단)한 반면, 한국인들은 그 비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다. 정당방위 판단에서 나타난 국가의 매우 큰 주효과는 집단주의/개인주의 가치관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관을 측정하는 4개 척도점수를 공변인들(covariates)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투입한 후에도 정당방위 판단에 대한 국가의 효과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정당방위 판단에 대한 국가의 차이가 집단/개인주의 가치관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차이가 귀인양식에서의 차이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만약 정당방위 판단에 대한 국가의 효과가 집단/개인주의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라면, 그것은 앞서 서두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타인 행위를 이해할 때 일치추론을 많이 하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상황요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인과 한국인의 가치관 차이는 집단/개인주의 차원에서 보다 수평/수직적 가치관 차원에서 더 크게, 그리고 더 일관되게 나타났다. 더군다나, 미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정당방위 인정을 월등하게 더 많이 한 결과는 사회심리학에서 널리 알려진 문화간 귀인양식의 차이와는 상반되는 결과다. 사회심리학에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개인주의 문화권 특히, 미국의 문화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이 타인의 행위에 대해 명백한 상황적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내적 요인에 귀인하는 근본귀인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본 연구의 미국인들은 한국인들보다 정당방위 인정을 덜 했어야 한다.

정당방위 판단에서 매우 크게 나타난 국가의 효과가 귀인양식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면, 국가간 법문화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유교적 법개념과 유럽대륙의 시민법 전통에 근거한 사법제도가 운용되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법의 일차적 기능이 안정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보통법 제도

www.kci.go.kr

가 발달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법의 일차적 기능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자구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해석은 본 연구에서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모든 조건에서 정당방위 인정을 월등히 많이 하였고, 심지어는 상황적 위험의 급박성이 없었던 살인사건에서조차 거의 모든 미국인(92%)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결과를 매우 잘 설명해준다.

정당방위 판단에 대한 국가의 효과가 국가간 법문화 차이에 기인한다는 해석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인 국가와 사건종류의 상호작용효과(*Wald* χ^2=8.75, p<.005)에 의해서 더 강화된다. 이 상호작용효과는 미국인이 상대적으로 중대한 범죄(살인)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상해)에서 보다 정당방위를 더 많이 인정(93% *v.* 71%)한 반면, 한국인은 그 반대(41% *v.* 54%)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 법의 일차적 기능이라고 믿는 경우(미국인)에는 중대 범죄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일수록 유죄판결을 받아 자유와 권리가(사법제도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보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보다 관대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반면에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법의 일차적 기능이라고 믿는 사람(한국인)은 경한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잠재적으로 사회질서 유지에 큰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그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쉽게 인정하지만, 중대 범죄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잠재적으로 사회질서 유지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더 많이 배척할 것이다.

본 연구의 또 한 가지 목적은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한국 법정의 판단이 일반인의 법관념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과 미국인은 공히 '현재성'요인의 존부에 따라 정당방위 판단을 달리하였다. 즉, 정당방위 판단에서 현재성의 주효과가 크게 나타난 반면(*Wald* χ^2=19.62, p<.001), 국가와 현재성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Wald* χ^2=0.63, ns). 한국인은 현재성 요인이 존재할 때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정당방위 인정을 더 많이 하였고, 미국인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들이 문화를 막론하고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에서도 묵시적인 기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가와 현재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사건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되었다. 정당방위 판단에 대한 국가, 현재성, 사건종류의 삼원상호작용효과(*Wald* χ^2=5.03, p<.05)가 그것이다. 이 삼원상호작용효과는 국가와 현재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상해사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살인사건에서는 다소간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상해사건에 대해서는 미국인과 한국인이 공히 상황요인(현재성)을 정당방위 판단에 고려하지만,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인만 상황요인을 고려하고 미국인은 현재성의 유무에 상관없이 정당방위 인정을 많이 하였다. 이 결과는 정당방위 판단에서 한국인과 미국인이 공히 상황요인을 고려하지만, 한국인이 더 일관되게 고려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그 암시는 근본귀인오류에 관한 사회심리학 연구들의 결과(타인의 행위에 대한 이해에서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상황요인을 더 많이/자주 고려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에 법문화 영향이 크게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법문화를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문화의 영향이 직접 경험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이에 대한 대안설명(귀인양식)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확인된 것이다. 만약 본 연구에서 제기된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유사한 법문화를 공유하는 나라들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법문화를 가진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일본, 중국)과, 미국과 유사한 보통법 문화를 가진 다른 나라들(영국, 캐나다, 등)에서 동일한 연구가

www.kci.go.kr

이루어질 것이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당방위의 법적 요건이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에서도 기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 결과는 미국의 배심재판이나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정당방위의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에 적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가능케 한다. 다만, 법적 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배심원과 법원 사이에 이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의 법정에서 정당방위 여부가 판단되어온 경향을 보면 한국의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상황요건들을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상황요건의 적용을 비법률적인 가외 요인이 묵시적으로 중개(moderate)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 중 상해사건 시나리오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방위행위를 한 사건이다. 이 시나리오의 실제 사건에서 한국 법정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였다. 한국의 법정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다른 사건들을 보면, 부모나 자식 등의 친족을 위험에서 구하거나, 약자(e.g., 여성)를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방위행위를 한 경우가 많고,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방위행위를 했을 때 정당방위가 인정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법정의 정당방위 판단에 가부장적 혹은 보호주의적(paternalistic) 기준이 부지불식간에 개입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정당방위에 대한 배심원과 법원의 이러한 이해차이가 섬세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중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또 하나는 미국인이 상대적으로 중대한 범죄(살인)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상해)에서 보다 정당방위를 더 많이 인정한 반면, 한국인은 그 반대 경향을 보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현상도 법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성문의 법에는 정당방위의 여부가 피고인 혐의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현상은 잠재적으로 정당방위 재판에서 편향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암시한다. 정당방위 판단에서 판단자의 문화와 피고인 혐의의 경중이 상호작용효과를 가지는 이유가 정확히 규명되어 실제 재판에서 편향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태명 (2008). 우리나라에서의 정당방위에 대한 역사적 고찰. 동북아법연구, 2(1), 329-363.

성유리, 박광배 (2012).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3), 1-12.

손해목 (1996). 형법총론. 법문사.

신대철 (2002). 정당방위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 2, 577-601.

이용식 (1995).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몇 가지 요건. 형사판례연구, 3, 89.

Andrews, P. W. (2001). The psychology of social chess and the evolution of attribution mechanisms: Explaining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2*, 11-29.

Baron, M. (2005). Justifications and excuses.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2*, 387-406.

Choi, I., & Nisbett, R. E. (1998). Situational salience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orrespondence bias and in the actor-observer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949-960.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A. (1999). Caus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 47-63.

Chu, Y., Diamond, L., Nathan, A. J., & Shin, D. C. (2008). Introduction: A comparative perspectives on democratic legitimacy in East Asia. In Y. Chu, L. Diamond, A. J. Nathan, & D. C. Shin (Eds.), *How East Asians View Democracy*. New

www.kci.go.kr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Davies, S. M. (1991). Evidence of character to prove conduct: A reassessment of relevancy. *Criminal Law Bulletin, 27,* 504-537.

Dripps, D. A. (2003).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Criminal justice and the social psychology of blame. *Vanderbilt Law Review, 56,* 1383-1438.

Gilbert, D. T., & Jones, E. E. (1986). Perceiver-induced constraint: Interpretations of self-generated re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69-280.

Gilbert, D. T., & Malone, P. S. (1995). The correspondence bias. *Psychological Bulletin, 117*, 21-38.

Gold, V. J. (1983). Federal rule of evidence 403: Observations on the nature of unfairly prejudicial evidence. *Washington Law Review, 58,* 497-506.

Greenewald, J. P., Tomkins, A. J., Kenning, M. K., & Zavodny, D. (1990). Psychological self-defense jury instruction: Influence on verdicts for battered woman defendant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8,* 171-180.

Grumer, J. (2004). IX. Self-Defense. *Loyola of Los Angeles Law Review, 36,* 1575-1595.

Haselton, M. G., & Buss, D. M. (2000). Error Management Theory: A New Perspective on Biases in Cross-Sex Mind Rea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1), 81-91.

Hung, Y., Chiu, C., & Kung, T. M. (1997). Bringing culture out in front: Effects of cultural meaning system activation on social cognition. In K. Leung, Y. Kashima, U. Kim, & S. Yamaguchi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Vol. 1, pp.135-146). Singapore: Wiley.

Ji, L., Peng, K., & Nisbett, R. E. (2000). Culture, Control, and Perception of Relationships in the Environ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943-955.

Jones, E. E. (1979). The rocky road from acts to dispositions. *American Psychologist, 34*(2), 107-117.

Jones, E. E., & Davis, K. E. (1965). From acts to dispositions: The attribution proces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Ⅱ, pp.219-266). New York: Academic Press.

Jones, E. E., & Harris, V. A. (1967). The attribution of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 1-24.

Jones, E. E., & Nisbett, R. E. (1972). The actor and the observer: Divergent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the behavior.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and B. Weiner (eds.),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pp.79-94).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Lelling, A. E. (1998) A psychological critique of character-based theories of criminal excuse. *Syracuse Law Review, 49,* 35-89.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Plenum: New York.

Nisbett, R. E., & Ross, L. D. (1980). *Human inference: Strategies and shortcomings of social judg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Malone, L. A. (2009). Is there really a difference between justification and excuse, or did we academics make it up? *Texas Tech Law Review, 42,* 321-325.

Markus, H. R., & Kitayama, S. (1991a).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Markus, H. R., & Kitayama, S. (1991b). Culture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J. Strauss & G. R. Goethals(Eds.), *The sel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New York: Spring-Verlag.

Masuda, T., & Kitayama, S. (2004). Perceiver-induced constraint and attitude attribution in Japan and the US: A case for the cultural dependence of

www.kci.go.kr

the correspondence bia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 409-416.

Morris, M. W. (1993). *Culture and case: American and Chinese understandings of physical and social causa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Morris, M. W., Nisbett, R. E., & Peng, K. (1995). Causal understanding across domains and cultures. In D. Sperber, D. Premack, & AJ Premack(Eds.), *Causal cognition: A multidisciplinary debate* (pp.577-612).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Morris, M. W.,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949-971.

Pennington, N. & Hastie, R. (1990). Practical Implications of Psychological Research on Juror and Jury Decision Ma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1), 90-105.

Pennington, N. & Hastie, R. (1991). A Cognitive Theory of Juror Decision Making: The Story Model. *Cardozo Law Review, 13,* 519-557

Robinson, P. H. & Darley, J. M. (1996). *Justice, Liability, and Blame: Community Views and the Criminal Law (New Directions in Social Psychology)*.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Pettigrew, T. F. (1979). The ultimate attribution error: Extending Allport's cognitive analysis of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5*(4): 461-476.

Quintanilla, V. D. (2010). (Mis)judging intent: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in federal securities law.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Law and Business,* 7, 195-246.

Ross, L. (1977). The intuitive psychologist and his shortcomings: Distortions in the attribution proces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174-228.

Schneider, D. J., Hastorf, A. H., & Ellsworth, P. C. (1979). *Person perception.* Reading, Mass.: Addison -Wesley.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Slobogin, C. (2002). Race-based defenses: The insights of traditional analysis. *Arkansas Law Review, 54,* 739-776.

Snyder, M., & Jones, E. E. (1974). Attitude attribution when behavior is constrained.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585-600.

Smith, V. L. (1991). Prototypes in the courtroom: Lay representations of legal concep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857-872.

Vonk, R. (1999). Impression Formation and Impression Management: Motives, Traits, and Likeability Inferred from Self-Promoting and Self-Deprecating Behavior. *Social Cognition, 17*(4), 390-412.

Yost, J. H., & Weary, G. (1996). Depression and the Correspondent Inference Bias: Evidence for more Effortful Cognitive Process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192-200.

Zebrowitz, L. A. (1990). *Social perception.* Pacific Grove, CA: Brooks/Cole.

1 차원고접수 : 2013. 04. 15.
수정원고접수 : 2013. 05. 19.
최종게재결정 : 2013. 05. 20.

www.kci.go.kr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3, Vol. 27, No. 2, 69-83

Effects of legal culture on lay judgment of self-defense

Yoori Seo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ongHan Kim Coastal Carolina University

Cynthia A. Meyersburg Coastal Carolina University

Kwangbai Park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wo questions about lay people's judgment of self-defense plea were examined with trial scenarios based on actual criminal cases in which the defendants plead not guilty by reason of self-defense: (1) Whether legal culture or cultural style of attribution influences the lay judgment of self-defense; (2) Whether lay people use situational information to determine self-defense. From the responses of 202 Korean and 205 American college students, it was suggested that legal culture, but not the cultural style of attribution, exerts strong influences on the lay judgments of self-defense. It was also found that lay people, regardless of culture, incorporate situational information sensitively to arrive at a judgment of self-defens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jury trials in which the defendants claim self-defense were discussed.

Key words : judgment of self-defense, legal cultur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www.kci.go.kr